

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인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7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김인제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성준, 김영철,
김원태, 김태수, 남창진,
민병주, 박강산, 박승진,
박칠성, 서상열, 송도호,
신복자, 오금란, 왕정순,
유만희, 유정희, 윤영희,
이민옥, 이소라, 이영실,
이원형, 이종태, 이종환,
정준호, 최민규, 한 신,
홍국표, 황유정 의원(29
명)

1. 제안이유

-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청소년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기관의 지원금을 동의 없이 인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재산 갈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, 이에 금융피해 관련한 법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, 소송 절차 등 법적 지원 규정 신설(안 제6조제1항제9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, 청소년 기본법, 청소년복지 지원법,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,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·지원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 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 년복지시설, 관련 단체 등에 예 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제6조(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9. <u>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</u> <u>상담,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</u> <u>원 등 법적 지원</u>
9. (생 략)	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(지원사업) 제1항제9호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,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 사업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(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) 각종 자료 확인결과 이는 **기추진 사업**1)으로 서울시 재정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 계 분 석 관	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

1) **[기추진사업]** 서울시 평생교육국 2025 <위기청소년 특별지원> : **1,247,280천원**(시비 623,640천원)

- 지원대상 : (만) 9~24세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위기청소년(비행,일탈 예방 청소년, 학교 밖 청소년,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, 은둔형 청소년)

※ 다만,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(국민기초생활보장 등)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

- 지원종류 및 내용 (※가장 필요로 하는 1개 분야 지원이 원칙)

- 생활지원 : 의복,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월65만원 이하,
- 건강지원 : 진찰, 약제, 처치, 수술, 입원, 간호 등 연 200만원 이하
- 학업지원 :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하, 검정고시 및 학원비 월30만원 이하
- 자립지원 : 지식,기술 습득을 위한 비용, 진로상담 비용, 직업체험 비용 월 36만원 이하
- 상담지원 :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월 30만원 이하 (※심리검사비 연40만원 별도)
- 법률지원 : **소송비용, 법률상담비용 연350만원 이하**
- 활동지원 : 수련활동비, 문화활동비, 특기활동비, 체육활동비 월 30만원 이하
- 기타지원 :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훈터 교정, 교복 및 체육복 지원, 수학여행비 등 지원

※ 자료 : 서울시 누리집(<https://news.seoul.go.kr/welfare/archives/544840>)